

제 호

단말장치 장착 · 개선명령서

소유자	성명(상호)
	주소(사업장)
자동차 등록번호	
위반내용	
개선사항	
이행사실 통보기한	
년 월 일까지	

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합니다.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을 완료하고, 단말장치 장착 · 개선명령 이행 사실을 시 · 도지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시 · 도지사

직인